

# 보상위원회 규정

(Compensation Committee)

2025. 3. 14

삼성물산주식회사



# 목 차

제 1 장 총 칙	
제 1 조 【목적】	1
제 2 장 구 성	
제 2 조 【구성 및 임기】	1
제 3 조 【위원장】	1
제 3 장 운 영	
제 4 조 【위원회】	2
제 5 조 【소집절차】	2
제 6 조 【결의방법】	2
제 4 장 권한 및 의무	
제 7 조 【결의사항】	3
제 8 조 【관계인의 의견청취】	3
제 9 조 【의사록】	3
제 5 장 기타사항	
제 10 조 【통지의무】	3
제 11 조 【간사】	4
제 12 조 【경비】	4
제 13 조 【규정의 개·폐】	4
〈 부 칙 〉	4

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삼성물산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정관 제 28 조의 2 및 이사회규정 제 14 조에 근거하여 이사보수 및 경영진 평가보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2조 【구성 및 임기】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이사임기 만료일까지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### 제3조 【위원장】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운 영

### 제4조 【위원회】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5조 【소집절차】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,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 제6조 【결의방법】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보상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 제 4 장 권한 및 의무

### 제7조 【결의사항】

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등기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
2. 등기이사 보상 체계에 관한 사항
3. 기타 이사보수 관련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### 제8조 【관계인의 의견청취】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제9조 【의사록】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기타사항

### 제10조 【통지의무】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 
단, 결의사항을 통지받은 이사가 그 사항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### 제11조 【간사】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, 이사회 의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### 제12조 【경비】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### 제13조 【규정의 개폐】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#### 〈 부 칙 〉

1. 이 규정은 2014년 08월 1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5년 09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7년 0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20년 0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20년 04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25년 0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